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1058
----------	------

발의연월일 : 2004. 10. 25

발 의 자 : 서순보 의원의 11인

1. 제정이유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하수도, 가로등, 경로당 등의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2003. 5. 29 개정, 2003. 11. 30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2조).
- 나. 지원대상은 단지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경로당 등 공용시설물이며, 지원한도는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지원방법은 각 공동주택관리주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심의·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원, 주택·건축·토목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위원회의 기능은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 지원사업대상 및 지원금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함(안 제9조).
- 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시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사.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함(안 제11조).
- 아.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이후에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13조).
- 자. 지원금을 교부 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한 때에는 사업추진실적과 그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검사를 거부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 또는 반환하도록 함(안 제15조).

3. 관계법령

- 주택법 (제43조제8항)
- 주택법시행령 (제16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4. 예산수반 사항

- 있음
 -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text{위촉직 위원 5인} \times 70,000\text{원} \times 4\text{회} = 1,400,000\text{원}$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지원금액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공동주택관리지원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종로구에 소재하는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①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단지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2. 하수도 준설 및 하수관로 응급 보수
3. 조정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시설 보수
4.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주거용 건물 외에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②지원한도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①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②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교통행정과장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의원 2인

3.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관계전문가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대상 및 지원금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5.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시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공동주택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11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결정한 이후에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정산서 제출 등) ①지원금을 교부 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한 때에는 사업추진실적과 그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법령 및 지원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검사를 거부한 때
3.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때

제16조(별도계정) 지원금을 교부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 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관리주체명의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계			
도로분야 (가로등 포함)			
하수분야			
조경분야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기 타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종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각1부 접 수 처 : 수탁과			